

[전세버스 운송약관]

제2장 계약 및 운임

제12조 (계약의 취소)

① 여객이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버스 사용일시 도래 72시간 이전에 사업자에게 통고하여야 하며, 이때에 사업자는 지체없이 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여객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72시간 이내에 계약을 취소하거나 버스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는 다음에 정한 금액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여객은 이를 즉시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일기불순등 여객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용일시의 48시간 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소정운임의 100분의 10
2. 사용일시의 48시간 내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소정운임의 100분의 20
3. 사용일시까지 취소 통고 없이 버스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소정운임의 100분의 30

제13조 (운송의 취소)

① 사업자는 천재지변, 파업, 일기불순 등 사업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버스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운송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지체없이 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의 일방적인 운송의 취소로 인하여 운행을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받은 계약금을 반환하고, 운송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여객에게 배상하여야 한다.